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



일시 : 2026년 6월 17일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발표자 : 공인회계사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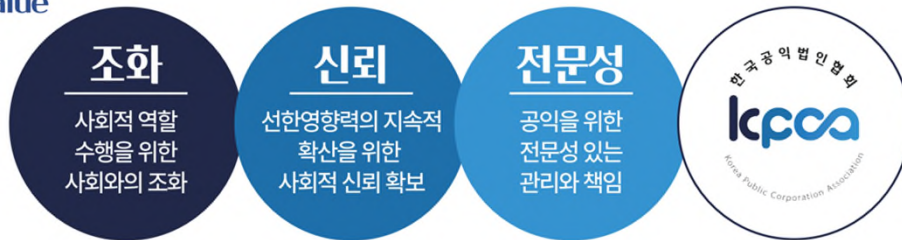
한국공익법인협회는 2017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재단 뿐 아니라 해외 유명 공익법인 한국지사, 시민단체 등 개인의 이익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법인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ission 선한 영향력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공익법인과 함께하는 파트너

Vision 따스한 관심이 모두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는 그날까지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공익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Value



실무자 역량교육

- 실무에 필요한 회계, 노무, 홍보, 최근 공익법인 관련 이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사례연구 및 연구지원

- 공익법인 현장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경영 환경 자문 및 개선

-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 회계나 세무 등 이슈에 대한 법적 자문 및 대변 활동 지원

한국공익법인협회 소개

실무관련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면?

- 한국공익법인협회 유튜브

www.youtube.com/@KPCA/featured



- 한국공익법인협회 카페

section.cafe.naver.com/ca-fe/home



공익법인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15% 도서 할인가 제공

“ 결제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기업은행, 049-084243-01-017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비영리단체를 위한 현물기부 가이드북'

비영리단체가 현물을 기부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정가 28,000원 → 23,800원

정가 20,000원 → 17,000원

모금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실무자들을 위한 효과 만점, 공감 백배조언

한눈에 보이는 친절한 모금 현장 안내서 '모금가 노트'



두 권을 한꺼번에 구입하면 40,800원 → 40,000원

CHAPTER

01

사건의 개요

01 사건의 개요

일자	주요내용
2024-06-17	설립허가 신청서류 초안작성 담당 주무관청 검토 요청 여가부 담당 주무관 B에게 접수함
2024-06-24	B주무관의 검토의견 사업내용이 정치적행동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음 사무실을 전대차가 아닌 임대차를 하라고 함. 법인의 설립 시 기본재산이 없어 기본재산 금액을 일정금액 이상 할 것을 요구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후원모집계획에 대한 확약을 요청함.

01 사건의 개요

일자	주요내용
2024-06-24	<p>B주무관에게 청소년 교육을 하는 여성가족부 내 유사 법인이 있음을 소명하고, 본 법인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제고와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간 과거 사업이력을 살펴보아도 정치적인 행동과는 무관함을 소명함.</p> <p><u>타주무관청에서 무상사용에 다른 전대차로 허용</u>하고 있음. <u>여성가족부 비영리법인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금액이 없음</u>을 소명함. 발기인이 기본재산으로 5백만원을 출연하겠다고 하였고, 타 회원들에게 후원의 확약을 요청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미등록 모집 및 기부금품모집 강요로 볼 수도 있어서, 발기인 2인이 각각 3백만원씩 추가 출연을 하겠다고 약정함.</p>

01 사건의 개요

일자	주요내용
2024-07-12	보완요청이후 추가적인 회신이 없어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1차 제출)
2024-08-01	1차 제출 설립허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함. 1) 2개 시도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이 있다는 근거가 불명확함 2)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움 행정심판을 접수함. 1차 행정심판을 접수함.
2024-08-06	사업장을 1개 추가 확보하여 1차 제출에 대한 추가서류를 제출함.

01 사건의 개요

일자	주요내용
2024-08-12	B주무관의 상급자 A사무관으로 담당자 변경 비법인사단으로 인천, 부천, 제천, 영월, 안산 등 전국단위 캠페인을 진행해온 점을 소명함. 8월1일에 반려사유로 명시한 재정안정성에 대한 기준금액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2024-08-21	법인설립 신청서 2차 제출 서울, 울산, 양평 세곳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함. 설립신청이후 추가 모집된 회원명단 첨부함. 회비수익을 늘림.
2024-08-21	행정심판 주무관청 답변서 청구인이 전국단위 활동을 하였다고 하나 단발적인 사업에 불과하고 기본재산이 5백만원 밖에 안 되어 재정 안정성이 부족함.

01 사건의 개요

일자	주요내용
2024-08-21	<p>행정심판 주무관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 제출</p> <p>재정 안정성의 정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알려주지 않음. 기본재산이 얼마가 되어야 재정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해달라 했음에도 제시를 못함.</p> <p>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타기관 또한 타지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임을 소명함.</p> <p>여성가족부 내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중 사업규모와 기본재산규모가 더 적은 사례가 있음을 소명함.</p>
2024-10-15	<p>설립허가신청서 보완</p> <p>1인당 회비금액 연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함.</p> <p>설립발기인 2인 1천만원 각각 추가 출연을 약정함.</p> <p>교육 위주의 사업이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소명함.</p>

01 사건의 개요

일자	주요내용
2024-10-16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재접수 3차
2024-11-04	3차 신청서류 반려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사업장이 전국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 유지] 활동지역별 회원의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여부를 알려달라고 함. <u>기본재산을 얼마하라는 사유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음</u>
2024-11-05	재정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에 대해 항의함.
2024-11-29	정보공개신청 1.여성가족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기준금액 2.2023년, 202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금액

01 사건의 개요

일자	주요내용
2024-11-29	정보공개신청 1.여성가족부의 비영리법인 설립 기본재산 기준금액 2.2023년, 202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금액
2024-12-10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답변 1.기본재산 기준금액 없음 2.한국가족센터협회는 기본재산이 1천만원임
2025-01-24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제출

01 사건의 개요

서울 행정법원

제 12 부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25아12945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 김덕산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 6, 2층(서교동, 대성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숙, 황인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경목, 김동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684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 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32조 중 '비영리 사단법인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CHAPTER

02

주요 쟁점

- 사업장 소재지
- 기본재산
- 수익사업
- 재정안정성

02 주요 쟁점

01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와 활동범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

02 기본재산 금액

부서별 기본재산 기준금액은 제각각임.

03 수익사업 허용여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04 재정안정성

기부금은 안정적인 수익원이 아니다.

02 주요 쟁점 - 사업장소재지

법무부 법령해석 안건번호 15-036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설립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을 주된 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법인의 활동범위를 그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의 권한자를 법인의 활동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편람 p419~p420]

02 주요 쟁점 - 기본재산

번호	부처명	기본재산 기준금액	기본재산없이 설립한 법인	최저기본재산 설립법인
1	문화체육관광부	없음	유	
2	여성가족부	없음	유	
3	통일부	2천만원	무	2천만원
4	국토교통부	없음	유	
5	기획재정부	없음	유	
6	산업통상자원부	없음	유	
7	국가보훈부	없음	유	
8	국방부	없음	무	
9	외교부	없음	*1)	

*1) 2023~2025년도 설립허가한 비영리법인 없음

02 주요 쟁점 - 기본재산

번호	부처명	기본재산 기준금액	기본재산없이 설립한 법인	최저기본재산 설립법인
10	고용노동부	없음	유	
11	보건복지부	없음	무	5천만원
12	농림축산식품부	없음	유	
13	환경부	없음	유	
14	법무부	없음	*2)	
15	중소벤처기업부	없음	무	5백만원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없음*3)	유	
17	행정안전부	없음	유	
18	해양수산부	없음	유	

*2) 정보관리안함, 제공불가 *3) 각 하위기관에서 정한 기준금액은 있음

02 주요 쟁점 - 수익사업

운 영 성 과 표

제 19(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8(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단위 : 원)

과목	제 19(당) 기			제 18(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운영수익						
I.사업수익	118,138,165,068	38,042,635,790	80,095,529,278	124,953,162,400	33,654,363,783	91,298,798,617
1. 보조금수익	27,733,941,464	12,945,558,044	14,788,383,420	36,619,357,451	10,201,994,517	26,417,362,934
2. 복표수익	21,576,583,291	21,576,583,291	-	22,180,734,842	22,180,734,842	-
3. 중계료수익	14,610,810,811	-	14,610,810,811	10,567,717,420	-	10,567,717,420
4. 입장료수익	16,858,989,547	-	16,858,989,547	16,720,829,441	-	16,720,829,441
5. 광고수익	172,004,219	-	172,004,219	204,313,832	-	204,313,832
6. 임대수익	151,379,320	-	151,379,320	151,379,320	-	151,379,320
7. 후원사수익(주7)	28,415,396,259	-	28,415,396,259	32,461,763,985	-	32,461,763,985
8. 기부금수익	3,478,546,242	3,478,546,242	-	1,271,630,410	1,271,630,410	-
9. 등록료수익	1,827,279,562	-	1,827,279,562	1,295,270,259	-	1,295,270,259
10. 기타수익	1,079,970,405	13,713	1,079,956,692	1,264,734,305	4,014	1,264,730,291
11. 교육비수익	1,689,516,675	41,934,500	1,647,582,175	1,754,293,188	-	1,754,293,188
12. 파주센터이용수익	543,747,273	-	543,747,273	461,137,947	-	461,137,947

02 주요 쟁점 - 재정안정성



여성가족부

재정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사단법인은 기부금 재원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부족하다면 추가 출연을 하겠습니다.
재정안정성 달성을 하려면 어느정도 출연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

기준이 없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재정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까?
판단의 근거는 있어야지요.



여성가족부

기준이 없지만 지금 출연하시는 걸로는 재정안정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사단법인은 회원을 확보해서 회비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02 주요 쟁점 - 재정안정성

법인명	연도	자산	기본순자산	사업수익				사업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청구인 신청법인	2024	54,800,000	5,000,000	42,000,000		12,000,000	800,000	27,900,000
사단법인 가정과삶의질학회	2023	30,000,000	파악불가	9,630,000	11,500,000	3,350,000	21,766,762	46,844,510
사단법인 국민여성리더스포럼	2020	13,026,745	파악불가	-	-	-	14,378	4,960,970
(사)나눔플러스청소년연합	2023	43,911,402	-			11,290,000	4,655,102	556,968,452
사단법인 밝은미래	2023	10,957,091	파악불가	74,430,238	-	-		71,920,697
(사) 사람과마을	2023	10,543,533	파악불가	30,313,452			11,078,431	38,013,209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2022	112,774,974	파악불가	127,463,656				34,847,032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	2023	123,774,276	파악불가	7,900,000	6,325,000	7,170,000	38,741,970	61,969,386
사단법인 행복나눔일리오	2019	115,121,662	13,636,957	19,141,009	43,234,928	10,072,214	16,443,399	82,847,755
사단법인 행복나눔일리오	2023	105,362,013	파악불가	30,298,606	-	3,141,780	31,729,093	25,958,412
사단법인 희망가온누리	2023	20,000,000	파악불가	20,753,417	195,000,000	2,812,383	3,110,470	218,850,270

02 주요 쟁점 - 재정안정성

접수일	2025.08.25
청구내용	<p>여성가족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p> <p>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간략하게 회신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최소 요건 유무2. 여성가족부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가정과삶의질학회, 사단법인 국민여성리더스포럼, (사)나눔플러스청소년연합, 사단법인 밝은미래, (사) 사람과마을, 사단법인 한국가족관계학회, 사단법인 행복나눔일이오의 기본재산 금액,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법인명은 삭제해주셔도 됩니다.3. 2의 정보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에 언급한 법인 중 설립시 기본재산이 가장 적은 법인의 기본재산 금액

02 주요 쟁점 - 재정안정성

답변일	2025.09.03
답변내용	<p>공개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50992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리 부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최소 기준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법인의 사업목적과 범위, 사업 내용,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적 기초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u>말씀하신 7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당시 기본재산은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각각 0원, 1,500천원, 5,000천원, 5,200천원, 8,000천원, 50,000천원, 75,000천원 입니다.</u>

02 주요 쟁점 - 재정안정성



수입재원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불분명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 및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기인 2명이 5천만원을 추가 출연하겠습니다.
타 법인도 저희보다 적게 출연해서 설립한 곳이 있습니다.



수입재원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불분명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 및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기인 2명이 1천만원씩 5년간 총 1억을 추가 출연하겠습니다. 발기인 2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사무실도 발기인 1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입재원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불분명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 및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02 주요 쟁점 - 재정안정성

청구 내용	<p>1. 문체부의 도고에 감사드립니다.</p> <p>2. 문체부로 부터 2022년~2024년에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시 출연금 최저 금액과 기본재산 최저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3. 청구인은 관광정책과 []에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두 사람은 기준에도 없는 금액으로 종합적 판단을 자행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설립 최저금액을 확인후 해당 금액에 맞추어 설립허가를 신청하려 합니다.</p>
-------	--

공개 내용	<p>안녕하십니까?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p> <p>* 2022~2024년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중 출연금/기본재산 최저금액: 1,900,000 원</p> <p>다만, 최저금액 자체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기준액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민법」상 자산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재정적 기초의 확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하는 바를 알려드립니다. 끝.</p>
-------	---

공개 일시	2025. 03. 11. 17	공개 장소	
-------	------------------	-------	--

비영리법인 출연금 현황(각 법인 설립 당시 기준)

	A	B	C
출연금	18,500,000	41,000,000	56,693,000

CHAPTER

03

현장사례와 대안

- 현장 사례
- 대안

03 현장사례

1) 공익법인 행정관리의 전문성 부재

01

A재단은 청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연구를 목적사업으로 수행 중.
코로나로 인해 기업가정신교육보다 청년들의 생계비·장학금 지원이 절실하여 정관에 목적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주무관청은 장학금은 교육청,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안내.

02

B재단은 학술연구를 목적사업으로 함. B재단은 정관에 수입원으로 회비, 국고보조금, 기부금을 기재하였는데
주무관청은 정관에 수입원으로 국고보조금을 기재하면 국고보조금을 주무관청에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국고보조금을 수입원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함.

03

C재단은 세금 납부를 하여야 하나 보통재산의 부족으로 주무관청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잘 모르겠다며, 재단을 해산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며 3달간 회신하지 않고 있음.

03 현장사례

1) 공익법인 행정관리의 전문성 부재

04 D재단은 O도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주로 O도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D재단은 사업의 일부를 서울에서 수행하였는데 지역을 벗어나 사업을 했다며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함.

05 사단법인 E는 경남에 주사무소가 있음. 법인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을 타시도에서 진행함. 이에 법인의 활동범위가 타시도에 걸쳐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라고 안내함.

06 OO구청은 정기감사에서 법인이 이사장의 건물에 임대차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함. 임대차는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이 되었음에도 특수관계인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함.

03 현장사례

1) 공익법인 행정관리의 전문성 부재

07

사단법인 K는 장애인이동관련 정책 제도 개선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함. 주무관청을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신청했으나 자신들은 주무관청이 아니라고 장애인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라고 안내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국토교통부 사무라고 함.

08

사단법인 Q는 설립시 수익사업으로 행사기획운동을 하고자 사업계획서에 반영함.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함.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니 부서가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함

09

재단법인 M은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함. 주무관청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다고 안내함.

03 현장사례

1) 공익법인 행정관리의 전문성 부재

10

중견기업 창업주 Z는 문화예술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은 전국 3개이상 시도에 사업소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함.

11

취약계층 청소년 여행지원과 지방중소도시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P씨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냈으나 지자체에서 설립허가 신청을 내라고 안내를 받음. 해당 지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설립허가 신청을 내라고 안내하여,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음.

12

보호종료청소년 주거지원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판단되어 재산세, 증부세 감면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화성시가 이행하지 않음.

03 현장사례

2) 타부처 업무처리 사례

01

비영리전담 소관부서 설치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과 전담부서 설치

02

공표된 설립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설립기준이 없는 부처가 대다수, 민원인 공무원 모두에게 필요

03

재량권 사용범위를 명확화

문서화된 근거있는 행정처분

03 현장사례

2) 타부처 업무처리 사례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

㉔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회원명부

- 최소기준을 충족하면서 사업성과 달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구분	작성 및 검토 기준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업별 시기, 방식, 대상, 예산 산출 근거 등 상세 기재 - 임원의 경력과 목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행능력 확인 - 회원 모집(확대) 계획, 회비 징수계획 기재 ※ 사업계획 검토를 위해 과거 사업실적 자료가 있을 경우 요청 가능
수지예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기본재산 금액 조건 없음 - 회비 외 기부금(후원금) 수입이 있으면 관련 모금계획 제출 - 법적 근거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자원(보조금) 불인정 -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예정) 여부 확인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는 상호 연계
회원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약정 연회비 기재 회원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함(발기인·임원 포함)

<표 4>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03 현장사례

1) 공익법인 행정관리의 전문성 부재

나. 기본재산 등 최소 필요 기준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회원 5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사업실적, 회비 총액 또는 목적사업비 1천만원 이상	
공익법인	회원 50명 이상, 기본재산 1억원 이상 *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경우 ①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② 공익법인으로만 설립 가능함 다. 주된 목적사업 기준 1) 내용: 정부조직법상 교육부 소관 사무 2) 비율: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상 목적사업비 총액의 60% 이상 집행	기본재산 10억원 이상

<표 5>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감사합니다.